

제목 :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행 예정일 : 2022.08.18
- 개정 약관명 :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
- 기존손님 적용여부 : 적용
-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제 1 조 적용범위 ~ 제 20 조 예금의 비밀보장 <생 략></p> <p>제 21 조 약관의 변경 ① ~ ② <생 략></p> <p>③ <신 설></p> <p>③ 거래처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 22 조 약관적용의 순서 ~ 제 24 조 이의제기 <생 략></p>	<p>제 1 조 ~ 제 20 조 <좌 동></p> <p>제 21 조 약관의 변경 ① ~ ② <생 략></p> <p>③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"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.</p> <p>④ 제 3 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 22 조 ~ 제 24 조 <좌 동></p>	<p>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문구신설</p>

<p>제 25 조 위법계약의 해지 <u>거래처는</u>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 25 조 위법계약의 해지 <u>금융소비자는</u>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</p>	<p>문구수정</p>
--	--	-------------

※ 이용자는 이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